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 폐지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33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옥 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 폐지	2
[참고자료] 양육비 선지급 관련 해외 사례	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0. 17.

다. 회 부 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과도한 소득·재산 자료의 증빙·조회가 요구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자의 고충과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에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Ⅲ. 검토의견

1.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 폐지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 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 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 소 등) ① (생략)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 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생략)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u> ③ ~ ⑤ (생략)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u>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u>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u>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u>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 ----- ----- ---<u>제21조의6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u>----- ----- -----<u>생활환경</u>----- ----- -----. ② ----- -----

현행	개정안
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	----- ----- -----<u>양육비</u> -----<u>채무 이행 여부</u>----- ----- ----- -----<u>관련 자료</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출입국·병무·교정</u>----- ----- ----- ----- ----- ----- ----- ----- ----- ----- -----.

현행	개정안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¹⁾이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우선하여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임. 2024.10.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을 개정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5. 7. 1.부터 시행되었음³⁾.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 2026년도 예산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금) 324억원과 선지급 제도 운영비 3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음 지원 대상자 13,500명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

현행법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①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③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집행권원 금액을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채무불이행, 소득기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지급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함⁴⁾.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⁵⁾ >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024년 9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심사시⁶⁾ 소득요건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결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과 같이 소득요건을 규정하였음.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4) 납부고지(30일)→독촉(30일)→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 및 강제징수 추진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6)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법안심사소위(2024. 9. 9),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법안심사소위(2024. 9.19), 제418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3차법안심사소위(2024. 9.23)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폐지할 경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 및 선지급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2026년도 양육비 선지급 예산은 324억원(13,500명 대상)⁷⁾이며, 2024년 9월 선지급 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심사시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576억원(2.4만명 자녀 대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과 관련 있는 제21조의6제2항(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자료 제공 동의 서면 제출)⁸⁾ 및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⁹⁾ 등 연관 조문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7) 2026년 양육비 선지급 예산 편성 근거

구 분		통 계	출 처
	'26년 18세 이하 유자녀 이혼·미혼 한부모	300,405가구	장래가구추계(통계청)을 토대로 추정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 확보율	31.0%	'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정기지급 채권 보유자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	20.0%	'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중위 150% 이하 신청률 등 고려한 조정	50.0%	-
선지급 대상 가구수		9,300가구	
	가구당 평균 자녀수	1.45명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가구총조사 고려
선지급 대상 미성년 자녀수		13,500명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문 의 처

02)6788-5649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양육비 선지급 관련 해외 사례¹⁰⁾

구분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제도 개요	• 도입 목적: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비양육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아동 빈곤 방지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 법적 근거: 「민법」, 「양육비 선지급법」 • 2017.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	• 도입 목적: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비양육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아동 빈곤 방지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 법적 근거: 「아동법」, 「양육비 선지급법」, 「양육비 회수법」	• 도입 목적: 한부모 가족 자녀 지원, 비양육 부모의 부재 또는 양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아동 빈곤 방지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 법적 근거: 「아동 및 부모법」, 「사회보험법」 ※ 「양육비선지급법」(1996-2010)폐지. 「사회보험법」에 통합
대상 및 신청 조건	• 대상: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원이 불충분 또는 부재한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 자녀, 자녀와 양육 부모가 함께 독일 거주 • 신청 조건(만 12세 이상 자녀): 자녀가 「사회법」 제2권에 따른 혜택 미수령, 또는 선지급금을 수급함으로써 「사회법」 제2권9항에 따른 공공부조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아야 함. 양육 부모가 「사회법」 제2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월 총소득이 최소 600유로여야 함 * 12세 미만 자녀의 경우 소득 기준 없음 • 외국인의 경우: 특정 거주/비자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국적별 충족 조건 상이함)	• 대상: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원이 불충분 또는 부재한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 자녀, 자녀와 양육 부모가 함께 노르웨이 거주 • 신청 조건: 양육 부모의 연간 총소득 650,100 NOK 이하, 해외에서 선지급과 유사한 제도를 수혜 중인 경우 노동 복지청에 신고 필수 • 양육비에 대한 부모 간 계약 또는 노동복지청의 결정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	• 대상: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원이 불충분 또는 부재한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 자녀, 자녀와 양육 부모가 함께 스웨덴 거주 • 신청 조건(만 18세 이상 자녀): 한쪽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등록되어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미혼 자녀로, 8주 이상의 정규 고등학교 교육 혹은 그 이하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있을 시 만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선지급 가능, 자녀가 직접 신청 * 소득 기준 없음(1937년 도입 당시 소득 기준 有 → 1948년 소득기준 폐지)

10)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4, 여성가족부)

구분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지급 제한 조건	· 양육 부모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거주 허가 소지 시 신청 가능	· 연령: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자녀가 교육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은 중단되며 양육 의무는 유지됨 · 자녀가 위탁 가정, 아동보호기관,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선지급 불가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노르웨이 거주자로 인정)	· 비양육 부모가 연체 없이 12개월 연속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선지급 중단 · 비양육 부모와의 직접 접촉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 등에서는 사회보험청의 승인을 통해 지속 지원 가능
지급 단가 산정	· 기준: 뒤셀도르프 표의 최소 부양비에서 아동수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선지급 기준금액 (2024년 기준): 만 0-5세: 230 EUR/만 6-11세: 301 EUR/만 12-17세: 395 EUR	· 기준: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으로 하되, 양육 부모의 소득/자녀 수/동거인 여부 고려하여 증감 · 선지급 기준금액 (2024년 기준): 일반: 1,480 NOK - 저소득자*: 만 11세 미만 1,970 NOK, 만 11세 이상 2,460NOK - 고소득자: 990 NOK * 연 소득 369,300 NOK 이하 일 경우 증액된 선지급금 (일반 선지급의 1/3 추가)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추가 증액	· 기준: 비양육 부모가 선지급 금보다 적은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사회보험청이 그 차액만큼 지급 · 선지급 기준금액 (2024년 기준): 만 7세 미만: 1,673 SEK/ 만 7세-15세 미만: 1,823 SEK/ 만 15세 이상: 2,223 SEK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만 12세 이상 자녀가 「사회법」 제2권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과의 중복 수혜 제한 · 아동수당: 양육비 선지급과 관계없이 지급되나, 지급 단가 산정 시 아동수당 금액을 제외	· 아동연금, 「국가보험법」에 근거한 장애, 상병, 상해, 또는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의 사망 전 돌봄 제공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수혜 제한 · 기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은 자산조사 기반으로 지급되기에 복지 혜택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선지급금에 영향 미칠 수 있음 예) 한부모 가족 혜택인 확대 아동수당, 추가유아수당 등	· 고아연금, 유족자녀수당과의 중복 수혜 제한 · 기타 다양한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 다만, 수급 복지 혜택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되기에 최종 선지급금에 영향 미칠 수 있음 예) 아동수당, 다자녀수당, 부모수당, 주택수당 등

<출처>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4, 여성가족부)